

시간제취업 허가신청 안내 (군산대학교)

1. 신청대상별 근로 시간 (재학생만 가능하며 졸업요건 미비 수료생 및 성적 2.0 미만자는 불가)

*원거리 근무는 군산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이어야 함

*고용주가 달라지며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
<한국어능력별 시간제취업 허가내용 [인증대학의 경우]>

구분	한국어능력 TOPIK, KIIP		허용시간		시작 시기
			주중	주말, 방학기간	
어학연수과정	2급	×	10시간		6개월후
		○	25시간		
학부 과정	1~2 학년	×	10시간		제한없음
		○	25시간	무제한	
	3~4 학년	×	10시간		
		○	25시간	무제한	
대학원과정	4급	×	15시간		
		○	35시간	무제한	

2. 준비서류

학 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합신청서 (자격외 활동허가에 V) - 시간제취업확인서 (국제교류교육원 유학생관리담당자 확인 필요) 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- 성적증명서(어학연수생은 출결증명서) 및 TOPIK 성적표 (또는 KIIP)* *TOPIK 성적표는 유효기간 도과한 것도 인정 가능함
	<p>[소속대학 외 연구활동으로 대학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도교수 확인서 -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의 교원 추천서 -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
고용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근로계약서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고용주 신분증 사본 -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(*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)

3. 시간제 취업 불가 업종 및 활동

-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등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(*대학원생에 한 해 자격외활동허가[E-3 비자] 필요)
- 제조업 및 건설업 (*제조업은 TOPIK 4급인 경우 신청 가능), 학원 강사 또는 개인교습, 배달대행업
- 졸업 및 학점취득과 관련없는 연구원이나 인턴으로서의 수익적 활동 (*학내 및 학외 무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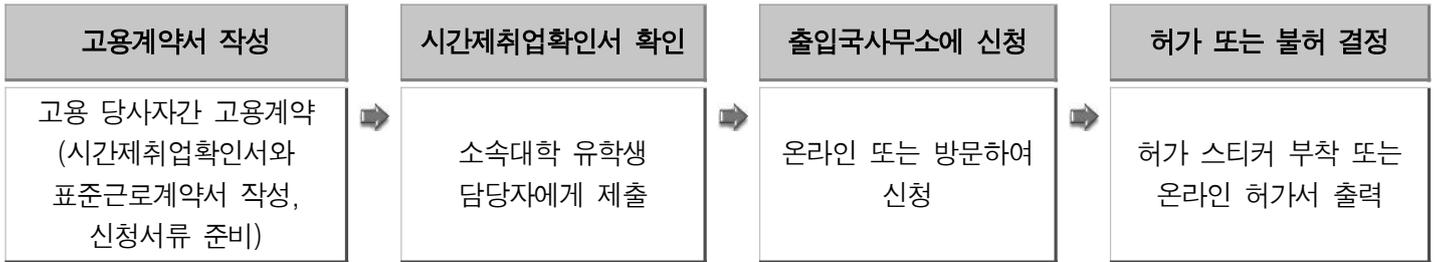
4. 미허가 시간제취업 처벌 기준

- (1) 미허가 취업: 심사 후 강제퇴거 또는 체류허가
 - 1차 적발 후 체류허가 결정이 난 경우 1년간 시간제취업 불가 (*취업 불가 업종인 경우 바로 강제퇴거)
 - 2차 적발 후 예외없이 강제퇴거
- (2) 허가 취업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1차 적발: 향후 1년간 시간제취업 불허
 - 2차 적발: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
 - 3차 적발: 유학자격 취소

5. 시간제취업 허가 제외대상 예시

- 수확중인 학교 내 조교(수업조교 포함)·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
-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및 졸업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십,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
-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로 사례금 등을 받는 경우, 조연·감정, 행사참가, 영화 또는 방송 임시 (1회 및 비 연속성)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
-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교내에서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
- 경찰청으로부터 임시적으로 통역요원으로 지정받아 비연속적으로 통역활동에 종사하는 경우

5. 시간제취업 신청 절차



6. 시간제취업 신청서 등 작성 예시

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Part-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				
대 상 자 Applicant	성 명 Name	군산대학교	외국인 등록번호 Alien Reg. No.	990101-5000000
	학과(전공) Department (Major)	재학학과	이수학기 Completed Semesters	3
	전화번호 Tel No.	010-1234-5678	e-mail	sample@gmail.com
취업예정 근 무 처 The expected place of employ- ment	업 체 명 Company Name			
	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.	업종 Type of business		
	주 소 Address			
	고 용 주 Employer	(인 또는 서명)	전화번호 Tel No.	
	취업기간 Period of working	어학연수: 최대 6개월 정규과정: 최대 1년 비자만료일 까지만	급여(시급) Wage per hour	
근무시간 Working hours	평일 : Weekday	토일요일 : Sat-Sun		
<p>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,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도 학업(또는 연구 활동)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에 확인합니다.</p> <p>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named student is enrolled at our university, and considering his/her academic and research progress hitherto, I believe that the part-time job indicated above will not impede his/her learning (research) in school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><small>※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,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(인종대학은 25시간),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</small></p>				
군산출입국관리사무소(출장소)장 귀하 Head of Gunsan immigration (branch) office				
유학생담당자 확인란 Confirmation from a Univ. Official.	소속 Univ Name	군산대학교	성명 (인/서명)	
	인종대학 여부 IEQAS	해당 YES □ 비해당 NO □		
	직위(연력자) Job Position	국제교류교육원 유학생관리담당자		

표준근로계약서(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)

_____ (이하 "사업주"라 함)과(와) _____ 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다음 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- 근로계약기간 :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
- 근 무 장 소 :
- 업무의 내용 :
- 소정근로시간 : _____ 시 _____ 분부터 _____ 시 _____ 분까지 (휴게시간 : 시 _____ 분~ 시 _____ 분)
- 근무일/휴일 : 매주 _____ 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_____ 요일
- 임 금
 - 월(일, 시간)급 : _____ 원
 - 상여금 : 있음 () _____ 원, 없음 () _____ 원
 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() _____ 원, 없음 () _____ 원
 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_____ 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 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),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)
- 연차유급휴가
 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-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
 -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
- 근로계약서 교부
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-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 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- 기 타
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_____ (전화 : _____)
 주 소 : _____
 대 표 자 : _____ (서명)

(근로자) 주 소 : _____
 연 락 처 : _____
 성 명 : _____ (서명)

7. 시간제취업 문의

-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: 063-469-4935 (정규과정) 063-469-4927 (어학연수)
-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) 1345